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시험명	시험방법	선발 예정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급	인원		
		합계			53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교육행정	9급	36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행정 (장애인)	9급	3		
		교육행정 (저소득층)	9급	1		
		전 산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공 업 (일반기계)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속 기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경력경쟁	시설관리	9급	6	1차: 한국사 2차: 사회	
		시설관리 (보훈부 추천)	9급	1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필기시험일이 2026. 6. 20.인 경우, 2026. 4. 30.이 기준일이 됨.

※ 2026년도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미 실시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5과목	2과목
시험시간	110분 (10:00 ~ 11:50)	40분 (10:00 ~ 10:40)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편의제공) 시험시간

- 1.5배 시간연장(10:00~12:45, 165분), 1.7배 시간연장(10:00~13:10, 190분)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응시연령

구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공개경쟁임용시험: 제한 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설관리 직렬은 자격증에 따라 근무경력이 필요하므로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참고

라.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 ① 2026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② 2026년 1월 1일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초본)’ 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제1항을 따릅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속기·시설관리 직렬]

-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기간을 충족해야 함

구분	직렬	직류	학력·자격증 등 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 관리	시설 관리	<p>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 시설관리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시설관리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입상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장</td> <td>전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사</td> <td>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사</td> <td>전기, 설비보전, 조경</td> </tr> </tbody> </table>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설비보전, 조경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설비보전, 조경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합니다.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입니다.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시설관리 직렬]

- 응시자격: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사람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입상실적 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및 이전주소 포함), **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2년 이상 시설 관리(전기, 설비보전, 조정) 근무경력, 시설관리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 이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시간제 근무일 경우 반드시 근무 시간 명시], **근무 사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 응시자의 자의적인 해석,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로 해당 경력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허위 제출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교육행정 직렬]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1】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지원 제공 안내’ 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교육행정 직렬]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 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자. 보훈부 추천(취업지원대상자) 구분모집 [시설관리 직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요건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추천과는 별도로 원서접수기간 내에 ‘온라인교직원채용’ 사이트에서 응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보훈부 추천(취업지원대상자) 구분모집 대상자는 보훈부 추천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보훈부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전북동부보훈지청(☎063-239-45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 출제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제1회 임용시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개	미회수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관리) 시험과목 중] 한국사, 사회	비공개	회수

-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정답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게시되며, 이의제기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하며, 문제는 비공개하고,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4. 13.(월) 09:00 ~ 4. 17.(금) 18:00 [취소마감일 : 4. 20.(월) 18:00까지]	필기시험	5. 26.(화)	6. 20.(토)	7. 20.(월)
		면접시험	7. 20.(월)	8. 14.(금)	9. 1.(화)

- ※ 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 알림마당 > 시험/채용/구직 > 지방공무원시험)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온라인 교직원채용(http://edurecruit.jbe.go.kr) 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가. 접수방법

- 접수처: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선택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다.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다른 사람 카드도 가능),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가상 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파일 이름에 특수문자 사용 불가)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사진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응시표 출력기간
제1회 임용시험	5. 26.(화) 10:00 ~ 6. 20.(토) 10:00까지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반드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및 필기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연락처 기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취소】** 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 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중복접수 불가】**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 확인】**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보훈부 추천】** 보훈부 추천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시설관리 직렬)는 보훈부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8~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 시 적용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가. 취업지원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는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는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응시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교육 행정	교육 행정	-	변호사	5%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컴퓨터시스템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5%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3%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 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설비보전 , 농업 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	-	5%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공조냉동 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 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업 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 설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 영사, 승강기	-	3%
	일반 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5%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가산 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위의 가항과 나항 중 하나와 다항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단,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임용대기 인력 미해소 등 인력운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합격자 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1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1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 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등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알림마당 > 시험/채용/구직 > 지방공무원시험’ 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확인 절차 진행 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은 허용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임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다기능시계,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답안카드에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OM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으로 하며, 제대로 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 절차에 대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비위행위 발생으로 피해자 발생 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제 단계별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안내됩니다.
-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 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진출이 제한됩니다.
 -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 등으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1】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접수기간: 2026. 4. 13.(월) 09:00 ~ 2026. 4. 20.(월)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후 근무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내 전 교육기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063-239-3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 2026년 변경사항 >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제한 없음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 적용

< 2027년 변경사항 >

-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

변경 전(현행)	변경 후
공통 과목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대체 ※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사 과목 출제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문항 수 개편에 따른 공동출제 과목 출제 문항 수 개편 및 필기시험 시간 연장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출제 문항 수 개편

구분		기존(5과목 100문항)		변경(4과목 100문항)		
9급 공개 경쟁 임용	공통 과목	국어	20	공통 과목	국어	25
		영어	20		영어	25
		한국사	20		한국사	'한능검 대체'
	전문 과목	예)교육학	20	전문 과목	예)교육학	25
		예)행정법	20		예)행정법	25

※ 기존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개편(전문과목 40문항에서 50문항으로 개편)

○ 필기시험 시간 연장

구분	시험시간	
	기존	변경
공개경쟁임용 (기록연구)	10:00~11:40(100분)	10:00~12:05(125분)
경력경쟁임용시험 (3과목)	10:00~11:00(60분)	10:00~11:15(75분)
경력경쟁임용시험 (2과목)	10:00~10:40(40분)	10:00~10:50(50분)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과목(2차)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변경

변경 전(현행)	변경 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예정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일반고(특성화학과 한정)의 졸업예정자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학과성적 기준 변경

변경 전(현행)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변경 후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등급이 2.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붙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